

<국민신문고 접수민원 검토의견>

□ 2018.8.10. 개정된 양평군주차장조례 제15조 제2항 별표 5 제5호 따른 주차대수 산정은

1.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주차대수를 산정 후
2. 그 산정된 주차대수에 1.3배 하여야 함.(양평군 법률자문 변호사 의견 참조.)

○ 질문 1답변(전용면적 각 62㎡인 8세대의 다세대 주택)
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	$(62 \times 8) / 95 = 5.22 = 6$ 대, 전용면적 60㎡초과 인 경우 세대 1대 이상 = 8대, 최종: 8대
주차장 조례	$8 \text{대} \times 1.3 = 10.4 = \text{최종 } 11 \text{대}$

○ 질문 2답변(전용면적 각 84㎡인 6세대의 다세대 주택)
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	$(84 \times 6) / 95 = 5.30 = 6$ 대, 전용면적 60㎡초과인 경우 세대 1대 이상 = 6대, 최종: 6대
주차장 조례	$6 \text{대} \times 1.3 = 7.8 = \text{최종 } 8 \text{대}$

○ 질문 3답변(전용면적 59㎡인 4세대, 40㎡인 4세대의 다세대 주택)
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	$(59 \times 4 + 40 \times 4) / 95 = 4.16 = 5$ 대, 전용면적 60㎡이하로 세대 0.7대 이상 = 5.6대, 최종: 6대
주차장 조례	$6 \text{대} \times 1.3 = 7.8 = \text{최종 } 8 \text{대}$

끝.